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8
------	-----

제출년월일 : 1999. 9. 13.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기구명칭변경과 기능조정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기구 명칭 변경 (안 제3조)

- 기획감사실 → 부군수 직속으로 편제
- 행정과 →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
- 지역협력과 → 문화관광과로 명칭 변경
- 세무회계과 → 재무과로 명칭 변경
- 경제통상과 →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

○ 기능 조정 (안 제3조 및 안 제6조)

- 기획감사실 홍보기능 → 문화관광과로 이관
- 자치행정과 병무, 주민등록·호적기능 → 민원봉사과로 이관
- 자치행정과 청소년 업무 → 사회복지과로 이관
- 민원봉사과 120민원기동대 업무 → 자치행정과로 이관
- 사회복지과 위생기능 → 보건소로 이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2단계구조조정 추진지침 「자치12200-118('99. 6. 15)」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을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을 두고”로 하고,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역협력과”를 “문화관광과”로,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동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제2호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병무에 관한사항”을 “삭제”하며, 동항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120만원기동대 운영, 현장생활·순회 기동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관리

동조동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병무에 관한사항,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제4호중 “지역협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 교육(학교)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교육(학교)에 관한사항”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자원봉사사업무 총괄”을 “삭제” 하고 동호다목중 “문화·관광”을 “문화”로 하며,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마. 군정홍보·보도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지원 및 관련시설 관리

동조동항제5호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마. 경영개발 및 수익등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제6호 “경제통상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동조동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단체 육성,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동조동항제9호다목중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공유수면 관리”로 한다.

동조동항제10호가목중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군도·농어촌도로 부지보상 및 동기”를 “삭제”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군도·농어촌도로 부지보상 및 동기

제6조제1항중 “소관사무를”을 “소관사무와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중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역협력과”를 “문화관광과”로,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2.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 제7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3. 고성군공인조례 제6조제1항, 동조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동조제2항, 제12조중 “행정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4. 고성군민상조례 제11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5.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3호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6.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경제통상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7. 고성군물품관리조례 제28조제2항중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하고, 제30조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8.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중 “경제통상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경제통상담당(6급)”을 “지역경제담당(6급)”으로 한다.
9. 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중 “경제통상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업지원담당(6급)”을 “상공진흥담당(6급)”으로 한다.
10.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제8조제1항제2호중 “지역협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감사실·행정과·민원봉사과·지역협력과·세무회계과·경제통상과·사회복지과·환경녹지과·수산과·건설과·도시과</u>를 둔다</p> <p>②(생략)</p> <p>1. (생략)</p> <p>가.~나.(생략)</p> <p>다. <u>군정홍보·보도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 지원 및 관련시설관리</u></p> <p>라.~마. (생략)</p> <p>2. <u>행정과장</u></p> <p>가.~다.(생략)</p> <p>라. <u>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 소방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설 ></p> <p>3. (생략)</p> <p>가.~라.(생략)</p> <p>마. <u>120만원기동대 운영, 현장생활·순회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관리</u></p> <p>4. <u>지역협력과장</u></p> <p>가. <u>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 교육(학교)에 관한 사항</u></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 <u>부군수 직속으로</u> <u>기획감사실을 두고, 자치행정과·</u> -----<u>문화관광과·재무과·지역</u> <u>경제과</u>----- -----</p> <p>②(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나.(현행과 같음)</p> <p>다. <u>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u></p> <p>라.~마. (현행과 같음)</p> <p>2. <u>자치행정과장</u></p> <p>가.~다.(현행과 같음)</p> <p>라. -----<삭제>----- -----</p> <p>마. <u>120만원기동대 운영, 현장생활·순회기동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관리</u></p> <p>3. (현행과 같음)</p> <p>가.~라.(현행과 같음)</p> <p>마. <u>병무에 관한 사항,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u></p> <p>4. <u>문화관광과장</u></p> <p>가.-----<u>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교육(학교)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나. <u>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육성관리,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원 총괄, 자원봉사업무총괄</u></p> <p>다. <u>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 종교업무, 문화·관광, 예술진흥의 종합기획추진에 관한 사항</u></p> <p>라. <u>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경영개발에 관한 사항</u></p>	<p>나. ----- ----- ----- ----- -----<삭 제></p> <p>다. ----- -----문화,----- -----</p> <p>라. <u>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u></p>
<신 설>	
<p>5. <u>세무회계과장</u></p> <p>가.~라(생략)</p>	<p>5. <u>재무과장</u></p> <p>가.~라(현행과 같음)</p>
<신 설>	<p>마. <u>군정홍보·보도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지원 및 관련시설 관리</u></p>
<p>6. <u>경제통상과장</u></p> <p>7. (생략)</p> <p>가.(생략)</p>	<p>마. <u>경영개발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u></p> <p>6. <u>지역경제과장</u></p> <p>7. (현행과 같음)</p>
<p>나. <u>여성복지, 여권신장 및 여성단체 육성, 건전 아동·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u></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단체 육성,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u></p>
<p>다.(생략)</p> <p>라. <u>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u></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u>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u></p>
<p>8. (생략)</p>	<p>8.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9. (생략) 가.~나(생략) 다. 수산자원보호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u>공유수면 점용허가</u>, 유·도선(내수면)장 관리</p> <p>10. (생략) 가.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u>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군도·농어촌도로 부지보상 및 동기</u>,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관리</p> <p>나.~라(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6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u>소관사무</u>를 수행한다.</p>	<p>9. (현행과 같음) 가.~나(현행과 같음) 다. -----, <u>공유수면 관리</u>, -----</p> <p>10. (현행과 같음) 가. ----- -----<삭제> -----</p> <p>나.~라(현행과 같음) 마. <u>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군도·농어촌도로 부지보상 및 동기</u></p> <p>제6조(소관사무) ①----- -----<u>소관사무와</u> <u>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u> -----</p>